



#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2016년 2월 법정검사 결과 보고

1. 관련근거

가.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(승강기의 검사)

나. 안전지원센터-3호 (2016.01.04) 『2016년도 승강기 법정검사 신청(기술원)』

다. 안전지원센터-4호 (2016.01.04) 『2016년도 승강기 법정검사 신청(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인천지원)』

라. 안전지원센터-5호 (2016.01.04.) 『2016년도 승강기 법정검사 신청(관리원)』

마. 안전지원센터-14호 (2016.01.04.) 『2016년도 승강기 법정검사 신청(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인천지사)』

2. 위 호와 관련하여 2월 법정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.

가. 대상

E/L : 39대, E/S : 28대, W/L : 1대 (총 68대)

나. 검사기간

2016년 2월 1일 ~ 2016년 2월 29일

다. 검사결과

구분	계	합격	조건부합격	비고
E/L	39대	39대	-	
E/S	28대	28대	-	
W/L	1대	1대	-	
합계	68대	68대(100%)	-	

끝.

사원 조아라

파트장 강우석

단장 03/02  
박기환

협조자 파트장 한정호